



Web Contents








2021년 04월 13일 00시 49분

목차

목차	2
공지사항	3
비수도권 시설별 방역조치 요약표	3
첨부파일(5)	3

비수도권 시설별 방역조치 요약표

작성일 2021.01.19 08:51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706

첨부파일(5)	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정 방역조치 행정명령... 171 hit/ 185.1 KB	다운로드	미리보기
	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정 방역조치 행정명령... 117 hit/ 294.0 KB	다운로드	
	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정 방역조치 행정명령... 76 hit/ 368.8 KB	다운로드	
	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정 방역조치 행정명령... 77 hit/ 253.0 KB	다운로드	
	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정 방역조치 행정명령... 83 hit/ 301.8 KB	다운로드	

□ 비수도권 시설별 방역조치 요약표

《완화 불가능한 조치》

- ▶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- ▶ 유흥시설5종, 홀덤펍,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
- ▶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·중단 조치
- ▶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
- ▶ 실외 겨울스포츠시설, 백화점·대형마트,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※ 적서 볼드체(밑줄)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

구분	비수도권 (21. 1. 18. ~ 21. 1. 31.) (거리두기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① 모임·행사	
사적 모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* (제외)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기타 모임·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 *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▶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	
공통 수칙	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
유흥 시설 5종	▶ 집합금지

<p>판매 직접 판매 관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노래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	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
구분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수도권 (21. 1. 18. ~ 21. 1. 31.) (거리두기 2단계+방역수칙 조정)</p>
연습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실내 스탠딩 연습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음식섭취 금지 ▶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간 1m 거리두기
식당· 카페 (무인 카페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▶ 식당·카페 모두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 ▶ 부패의 경우 공용집게·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▶ (시설면적 50㎡ 이하식당 - 강력 권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면적 50㎡ 이하식당 띄어앉기 ▶ (기업체 구내식당 - 강력 권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체 구내식당 3밀지역(밀폐·밀집·밀접) 식사금지, 주기적 환기 실시 -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중 택1 - 식사시 가급적 소규모로 분류, 분산해서 식사하기
카페 (무인 카페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중 택1 - 식사시 가급적 소규모로 분류, 분산해서 식사하기
홀덤편	▶ 집합금지
실내 체육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실외겨울 스포츠 시설 (스키 빙상장 눈썰매 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▶ 수용인원의 1/3으로 인원제한 ▶ 타 지역·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▶ 장비·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▶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▶ 직원·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▶ 부대시설 중 식당·카페의 경우 식당·카페 수칙 적용 ▶ 탈의실·오락실 등의 시설은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학원· 교습 소 (독서 실.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하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(익

제외 직업	일 05시까지)운영 중단
----------	---------------

구분	비수도권 ('21. 1. 18. ~ '21. 1. 31.) (거리두기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훈련 기관	
결혼 식당	▶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장례 식당	▶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목욕 장업	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영화 관	▶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공연 장	▶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PC방	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오락 실·멀티방 등	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독서 실·스 터디 카페	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, 21시 이후 운영 중단
놀이 공원· 워터 파크	▶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
아·미 용업	▶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백화 점·대 형마 트	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▶ 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▶ 집객행사 금지 ▶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) 이용 금지
마트· 상점 (300 ㎡ 이상)	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

구분	비수도권 (21. 1. 18. ~ '21. 1. 31.) (거리두기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② 기타 다중이용시설	
숙박시설	▶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 제한 ▶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▶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▶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▶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파티룸	▶집합금지
국립시설	▶경륜·경마·경정·가지노 운영 중단 ▶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
사회복지이용시설	▶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
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	
마스크 착용의무화	▶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교통시설이용	▶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
스포츠 관람	▶10% 이내로 관중 입장
등교	▶밀집도 1/3 준수 (고교 2/3)
종교활동	▶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 ▶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
직장근무	▶공공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▶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▶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

목록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MokPo - Si ***Web Contents***

